

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무장애 관  
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9 월 2 일

여 수 시 장 2022.9.2



여수시 조례 제1751호

붙임 여수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  
정조례 1부.

## 여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본문 중 ‘제9호’를 ‘제10호’로 하고, 같은 조에 ‘제9호’를 신설한다.

9.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

10.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6조 본문 중 ‘제2항’을 ‘제3항’으로 하고, 같은 조에 ‘제2항’을 신설하고,

‘제3항’ 중 ‘제1항’을 ‘제1항과 제2항’으로 한다.

- 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「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관광환경 조성사업) 시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무장애관광 실태조사</li> <li>2. 무장애관광 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</li> <li>3.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</li> <li>4.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</li> <li>5.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</li> <li>6.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</li> <li>7.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</li> <li>8.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<u>&lt;신설&gt;</u></li> <li>9.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</li> </ol> <p>제6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「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</p>	<p>제5조(관광환경조성사업)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-----</p> <p>2.-----</p> <p>3.-----</p> <p>4.-----</p> <p>5.-----</p> <p>6.-----</p> <p>7.-----</p> <p>-----</p> <p>8.-----</p> <p>9. <u>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</u></p> <p>10.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</p> <p>제6조(재정지원)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<u>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「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</p>